

강동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공고

강동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및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강동구가족센터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동구가족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직원의 고충 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강동구가족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이하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 2인과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2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2년 6월 3일까지 사무실 아이돌봄팀으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향후 강동구가족센터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준비위원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도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공고

1. 근거법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가. 구성기간: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3일
 - 나. 구성방법: 4명
 - 1) 사용자 준비위원: 2명(기관장 위촉)
 - 2) 근로자 준비위원: 2명(자발적 참여)
 - 다. 근로자 준비위원
 - 1) 선정대상: 강동구가족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2) 선정방법: 참여신청자(2명이 넘을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 3) 참여방법: 2022년 6월 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 근로자 준비위원이 선거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선거관리위원은 근로자 위원 출마불가
3. 향후 노사협의회 설치일정
 - 가. 근로자측 준비위원 모임: 근로자 위원 선출 방법
 - 나. 근로자 위원 선출
 - 다. 근로자 위원 선출 및 동수의 사용자 위원 위촉
 - 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마. 노동지청에 협의회 규정 신고

붙임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 신청서 1부

[붙임]

강동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 소 속:
- 직 종:
- 성 명:
-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강동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2년 6월 일

강동구가족센터장 귀하